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·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시행계획의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8조의 장기등이식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 (시행계획의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8조의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31